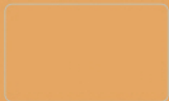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 김은설 · 김문정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 김은설 · 김문정 편역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 김은설 · 김문정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 일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 간행되고 있는 세계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호주와 영국, 2008년도에는 미국과 캐나다, 2009년도에는 핀란드와 프랑스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뉴질랜드의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목차

1 장

뉴질랜드의 사회와 문화

1. 사회·역사적 배경 • 04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성평등 • 06
3. 교육제도 • 09

2 장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1.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역사적 배경 • 12
2.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근거 • 17
3.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과정 • 19

3 장

육아정책 개관 및 동향

1.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유형 • 22
2. 교육비·보육료 지원과 질적 수준의 관리 • 25
3.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와 보조금 • 30
4. 교사교육 • 35
5.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 • 38

4장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현황

1. 육아지원 기관 현황 • 40
2.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41
3. 교사 현황 • 46

5장

ECE를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전망

1. 부모 지원 및 개발 • 51
2. ECE 재정 체계 • 52
3. 법규 검토 • 55

참고문헌

• • 58

뉴질랜드의 사회와 문화

1. 사회 · 역사적 배경

뉴질랜드는 호주로부터 1,600km 떨어져 있으며, 북해협으로 나누어진 남·북 두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로서, 해발 200m 이하의 땅이 온 섬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총면적은 북섬, 남섬, 스투어트 섬, 그 외 작은 섬들을 모두 합쳐 268,680km로, 영국보다는 약간 크고 일본보다는 작으며 대한민국의 2.7배, 한반도의 1.3배이다. 전체면적의 43%가 북섬, 56%가 남섬으로서, 남섬의 면적이 더 크지만, 인구의 75% 이상은 북섬에 살고 있다. 수도 웰링턴과 주요 도시 오클랜드, 해밀턴은 북섬에 위치한다¹⁾.

뉴질랜드가 역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10세기 무렵

1) 출처: <http://ko.wikipedia.org>

마오리족(Maori)이 정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마우리족은 카누로 이동해 왔으며, 해안선을 따라 12세기까지 거주지를 확보해 갔다. 약 6세기가 지난 후인 1642년, 독일인 항해사인 타스만(Abel Tasman)의 배가 마우리족 최초 정착지인 Aetearoa에 도착하면서 서방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769년 영국의 쿡(James Cook)선장과 선원이 도착한 이후 뉴질랜드 해도가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몇 십년이 지난 후, 1840년에 와이탕기(Waitangi) 조약이라 불리는 헌법상의 협약이 영국과 마오리(Maori)족 사이에 조인되었다. 뉴질랜드는 이웃나라 호주와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호주에 비해 뉴질랜드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원주민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여 백인 중심의 국가를 건설한 호주와는 달리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원주민과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과 제휴를 통해 다문화 국가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공용어로 마오리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나 주요 기관의 구성원들의 일정 비율을 마오리족 원주민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다(장근영, 2010).

주민은 유럽계 백인 87%, 마오리족, 폴리네시아인이 있고, 인도인과 아시아인도 많이 거주한다. 백인들은 영국계는 물론, 아일랜드계와 네덜란드계 등이 섞여있고, 마오리족은 지역마다 여러 종족들로 나뉘어져있다. 총 인구는 4백10만명(2005)이고, 이 중 14.5%가 마오리족이다(OECD Country note, 2010). 마오리족은 이미 도시로 옮겨가 현대 생활에 적응하여 살고 있다. 공식 국가 언어는 영어로 인구의 90%가 사용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마오리어가 공식언어로 채택되어 두가지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제는 주로 농업과 목재 상품에 의존한다. 정보와 서비스 산업은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는 매우 낮은 비율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일인당 국민총생산은 2005년 기준 24,996달러이고, 연간 합계출산율은 2.0명에 이른다.

뉴질랜드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복지국가 중의 하나이다. 세계 최초로 양로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완전고용 등 사회보장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병이 나면 무료로 요양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노인연금이 지급되며,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이다. 의무교육 연령은 6세부터 16세까지이다.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성평등

○ ECD에서 발간한 Countrynote(2009)에 의하면, 15세 이상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60.4%에 이르며,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34.7%이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45.1%이고, 3-5세 자녀를 둔 경우는 60.6%이며, 3세 미만 영유아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3%이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적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는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s, GEM)를 통하여 볼 때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성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육아지원서비스 이용현황

| 지표 | 지수 | 통계연도 |
|--------------------|------------|--------|
| 인구 | 4,100,000명 | 2005 |
| 합계출산율 | 2.0 | 2000/5 |
| 1인당 국민총생산(GDP) | 24996 US\$ | 2005 |
|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60.4% | 2005 |
| 남성 대비 비율 | 82% | 2005 |
| 시간제 근로자 비율 | | |
| 남성 | 11.2% | 2007 |
| 여성 | 34.7% | 2007 |
| 취업률 성차 | 17% point | 2004 |
| 영유아 자녀 모의 취업률 | | |
| 3세 미만 자녀 모 | 45.1% | 2005 |
| 3-5세 연령 자녀 모 | 60.6% | 2005 |
|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 |
| 3세 미만 | 43% | 2007 |
| 3-5세 | 99% | 2007 |

UNDP에서 발표하는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남녀평등지수를 통해 뉴질랜드 남녀의 평균수명, 초중고 취학률, 예상소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뉴질랜드 여성의 평균수명은 약 82세로 남성보다 약 4세 길며, 초중고 취학률은 100%로 남성보다 10% 높으며, 예상소득은 약 2만1천 달러로 남성보다 약 8천 달러 적다. 한국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한국보다 남녀평등 순위가 높으며, 예상소득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가 한국에 비해 작다. 남성 추정소득 대비 여성 추정소득이 뉴질랜드의 경우 72%, 한국의 경우 52%이다(김창연, 2009).

〈표 2〉 한국과 뉴질랜드의 남녀평등지수 비교

| | 순위 | 점수 | 평균수명(세) | | 취학률(%) | | 추정소득(US\$) | |
|------|----|-------|---------|------|--------|-------|------------|--------|
| | |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 뉴질랜드 | 20 | 0.987 | 82.0 | 77.9 | 100.0 | 90.0 | 21,181 | 29,391 |
| 한국 | 25 | 0.917 | 81.8 | 74.6 | 85.7 | 100.0 | 15,781 | 30,143 |

자료: UNDP(2009), Human development indices, UNDP.

출처: 김창연(2009), 해외 성인지표 사례 분석: 뉴질랜드의 '변화'를 위한 지표 Indicators for Change 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DR)」를 통해 정치·경제 분야의 여성 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로 볼 때 뉴질랜드는 조사 대상 국가 108개국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원의 비율은 33.1%, 행정관리직 중 여성은 40%, 전문직은 52%이었으며 남성 추정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남녀 소득비는 0.72이다.

한국의 여성권한척도 자료와 비교하면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모든 요소에서 높은 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표 3〉 한국과 뉴질랜드의 여성권한척도 비교

| | 순위 | 점수 | 여성의원(%) | 여성 행정관리직(%) | 여성 전문기술직(%) | 남녀 소득비 |
|------|----|-------|---------|----------------|----------------|-----------|
| 뉴질랜드 | 13 | 0.823 | 33.1 | 40 | 52 | 0.72 |
| 한국 | 68 | 0.540 | 13.7 | 8 | 40 | 0.52 |

자료: UNDP(2009), Human development indices, UNDP.

출처: 김창연(2009), 해외 성인지표 사례 분석: 뉴질랜드의 '변화'를 위한 지표 Indicators for Change 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3. 교육제도

뉴질랜드는 영국식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전통을 중시하고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77년 최초로 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89년 교육법과 그 뒤 수정법안을 거쳐 지금은 16세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근복, 2008).

학교는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이며, 일부 사립학교는 종교단체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없는데 이는 교과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여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산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만 5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며,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다.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과정인 Intermediate 2년, 고등학교 과정인 Secondary가 5년인 13년 학제이다. 뉴질랜드의 중등과정은 High School이나 Grammar School, College로 구분하여 학제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996년 이전까지 뉴질랜드 학교의 년 중 학기는 3개의 Term으로 운영되었으나 Term을 좀 더 짧게, 방학을 좀 더 자주 하는 것이 아이들을 덜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 더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는 1년을 크게 2개 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 안에 2개의 Term을 두어 1년을 총 4개의 Term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주로 1월 말경에 Term1을 시작하고 4월 중순경에 Term2를 시작하여 6월말에서 7월초에 1학기가 끝나면서 겨울방학을 갖는다. 겨울 방학은 약 2주간으로, 7월 하순에 다시 2학기인 Term 3을 시작하여 9월 하순경에 Term 3이 끝나면서 약 2주간의 방학을 갖고 10월 초순에 마지막 Term 4를 시작하여 12월 초순에 2학기가 완전히 종료된다. 학교 수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학교 급식은 없고 아이들은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하여 등교한다(최창우, 2010).

〈표 4〉 뉴질랜드의 학제

| 연령 | 기관 및 학년 | | |
|--------|-----------------------------|---------|-----------------------------|
| 3~4세 | 유치원 | | |
| 5세 | Primary School | Year 1 | Primary Junior 1 |
| 6세 | Primary School | Year 2 | Primary Junior 2 |
| 7세 | Primary School | Year 3 | Primary Junior 3/Standard 1 |
| 8세 | Primary School | Year 4 | Primary Junior 4/Standard 2 |
| 9세 | Primary School | Year 5 | Primary Junior 5/Standard 3 |
| 10세 | Primary School | Year 6 | Primary Junior 6/Standard 4 |
| 11세 | Intermediate School/College | Year 7 | Form 1 |
| 12세 | Intermediate School/College | Year 8 | Form 2 |
| 13세 | High School/College | Year 9 | Form 3 |
| 14세 | High School/College | Year 10 | Form 4 |
| 15세 | High School/College | Year 11 | Form 5 |
| 16세 | High School/College | Year 12 | Form 6 |
| 17세 | High School/College | Year 13 | Form 7 |
| 18세 | Polytechnic or University | | |
| 19세 이상 | Polytechnic or University | | |

출처: 최근복(2008),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부산교육, 327.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²⁾

1 1986년 이전에는 뉴질랜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 책임은 교육부, 사회복지부, 마오리 담당부 등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86년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공식적으로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초기에서 1990년대 후반 사이에 이러한 행정적 이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요 절차들이 이루어졌고, “5세 이전(Before Five)”이라 불리는 유아기 교육·보육 정책 개혁을 수행하면서 교육으로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여기에서는 뉴질랜드 유아교육과 보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행정이 한 부서로 통합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²⁾ 출처: Meade, A. & Podmore, V. N.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Department/Ministry of Education - A Case Study of New Zealand, UNESCO: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 n°1*.

1. 유아교육 · 보육 통합의 역사적 배경

가. 보육에 대한 사회적 냉대(1900년대~1970년대 이전)

20세기 초반까지 뉴질랜드에서는 보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던 것이다(Social Advisory Council, 1985). 이 시기의 사람들은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일하러 밖에 나가야 하는 가족의 '문제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보육'이라고 생각하였고, 정부는 반대로 유치원의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원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보육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제도화되지 않았다.

보육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는 1960년에 공식화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훈련이나 교육과 관련한 것은 아니었고 시설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교육부 소속 아동복지국의 관할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 의한 보육 서비스의 감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곳은 교육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시설 규정은 유아를 위한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되었고, 유치원과 놀이센터가 영유아 보육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은 복지 이상의 것을 다루었는바, 예를 들어 고소득층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업을 지불하는 사립 유치원과 부모협동시설 등이 나타난 것이다.

1900년대 초반부터, 유치원이 먼저 정부와 지원을 협상하기 시작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놀이센터가 뒤를 이었다. 점차적으로,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운영자금으로 유치원과 놀이센터에 지원하

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가장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

보육 서비스 시설의 부족은 정부 지원의 부족에 기인했다. 한 시설장(Sonja Davies)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한 후에 1960년 초반에 뉴질랜드 「영유아보육시설협회(the New Zealand Association of Child Care Centres)」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교육과 동일하게 보육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영유아보육 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여러 저항요소 때문이었다. 첫째, 보육은 여성을 일터로 나가도록 허용하는 종일 서비스로 인식되었으므로, 종일 보육이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둘째, 돈을 버는 여성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고, 보육은 이들 취업모들에게 ‘개인적인 선택 상품’처럼 보였다. 또한,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다 보육료 전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1974년에 소개되었고, 1980년 초반에 정식 교육을 받은 교사 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가 편성되면서 보육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육에 대한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은 1989년에야 도달되었다.

행정구조의 변화(1972년)

1972년에, 사회안전부가 사회복지부로 변경되었을 때, 교육부 아래에서 보육시설 관리를 책임졌던 아동복지국은 사회복지부로 옮기게 되었다. 보육서비스가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정부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회복지부로의 이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는 자선의 형태를 띤 경우로, 보육시설은 아동의 보호(Protection)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보육 관리를 다른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 영유아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1970년대)

1971년에 출범한 “학령전 교육(Pre-School Education) 조사 위원회”는 영유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대신 취업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놀이센터, 영리 사업체가 많아졌다.

1972년에, 보육시설, 유치원, 놀이센터 간 유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위원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사회복지부로 옮겨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1970년 초반부터, 많은 지역사회의 로비스트들이 여성의 자유, 보육 수용, 그리고 보육을 향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들 변화는 1971년 3월 여성의 자유를 나타낸 플래카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엄마를 자유롭게(Free Mum)

아빠를 자유롭게(Free Dad)

나를 자유롭게(Free me)

보육을 무료로(Free childcare)

1970년대는 보육이 ‘운이 나쁘게’ 집 밖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에서 모든 시간 엄마였던 여성을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해주는 서비스로 변화된 극적인 시기였다. 공식적인 인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초기에는 발도 내딛을 수 없었던 전문직에서 여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보육의 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여성들로부터 다르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보육과 교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보육의 질을 높여서 영유아들이 교육적 혜택을 얻게 하지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개별 움직임은 정치적 변화를 실행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에, 관심의 초점은 보육을 위한 행정적 구조가 되었다. 1976년 3월, 총리가 사회 경제 발전(개발)에서 여성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가 통과되었다:

- 보육과 교육은 동일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놀이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동일하게 사회복지부가 진행해 간다. 이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보육시설의 교육적 기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 주 장관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정책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다. 마오리족(원주민) 영유아 서비스의 개혁(1980년대 초)

1982년, 마오리족을 위한 새로운 영유아운동(nga kohanga reo)이 시작되었다. 이 발상은 1981년 마오리족의 부족 회의에서 시작되었는데, 주요 목적은 마오리족을 강화하여 권력을 부여하고, 마오리 언

어인 te reo Maori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마오리 언어로 유아교육을 하는 마오리 사람들은 비록 마오리족 관련 부서의 지원이 적었지만, 비전을 보고 다수의 kohanga reo가 설립되었다. 보육시설 규정과 보육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영유아서비스 (nga kohanga reo)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라. 노동당 정부의 출범: 보육에 대한 지원의 증대(1980년대 중반)

1984년 말, 뉴질랜드에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었다. 영유아 이슈가 그들 정치적 협의사항에 주요 부분이 되기 시작했다. 여성들과 교육을 위한 정당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좋은 질의 유아교육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다. 좋은 질의 ECCE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새로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약을 했다:

- 평등한 기금 제공: 유치원과 놀이센터와 보육 간 균형
- 영유아보육 행정의 교육부 이관: 영유아들에서 교육과 보육은 분리될 수 없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낳는다는 신념
- 유아 교사 관련 연구의 증진과 확충

2. 유아교육 · 보육 통합의 근거

1970년대, 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킨 지역 사회 단체가 있었다. 그들은 보육을 위한 지원의 주 이유가 단지 저소득층의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자유(해방)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마들의 관심이 촉진되었다: “하루 종일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녀와 엄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May, 2000, p.56). 하지만, 여성의 해방과 보육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항과 직면해서 보육에 진전을 가져오지 않았다. 많은 설전 후에, 여성 운동과 보육에 대항한 반발을 포함하여, 지지자들은 보육이 수혜자로서의 유아에게 교육적 배경이 연결된다면 보육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원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질 높은 보육이 영유아에게 이로우며, 유아교육의 형태이기도 하며, 가족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행해진 두 연구는 유아교육의 혜택의 증거를 제공하는 핵심이었다 (Lazar & Darlington, 1982). 아동들의 흥미가 고려될 때, 모든 영유아들은 그들이 다니던 서비스가 무엇이든 질 높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May, 2000).

행정가들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교육과 보육을 보았고, 이들 논쟁은 1980년대 중반의 정치적 변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개념(ECCE: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은 유아교육(ECE: Early Childhood Education)으로 대체되었다” (May, 2001, p.122).

뉴질랜드 정부 사회 평등 위원회는 Anne Meade를 1988년 1월에 소집된 유아보육과 교육 작업 그룹(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orking Group)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들 작업 그룹의 회원은 교육부, 사회복지부, 건강부의 공무원, 여성부, 재무부, 주 서비스 위원회, 마오리와 태평양섬 공동체 대표, 교육대학 교수들을 포함했다. “평등”은 이 작업 그룹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이었다. 그들의 업무는 ECCE로의 합리적 접근을 위한 요구, 재정과 기금조성 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권고를 포함했다(Department of Education, 1988).

1990년대 많은 국가 성명들은 서비스의 종류보다는 ECCE의 질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 지지자들은 서비스의 종류와 무관한 질을 원했고, 이것이 보다 통합을 가능케 한다고 여겼다. 연구는 유아들이 질 좋은 ECCE의 혜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유아교육 질과 적절한 교사교육 사이간 관련성이 중요해 졌다. ECE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는 시설들이 더 좋은 질의 보육을 제공한다고 믿었다(Ruopp et al, 1979;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3년간의 양성과정에 대한 연구(Department of Education, 1986b)는 3년간의 유치원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권고하였다. 그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2년간의 교육을 받았고, 보육교사는 1년의 교육을 받았다.

보육과 교육의 통합이 진행되는 중에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간 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이 다를 수는 없었다. 공동 교사교육 지지자들은 이 사례를 평등 논쟁에만 놔두지 않았다. “보육종사자들이 이 복

집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Department of Education, 1986a, p.9). 보육 교사에 대해 정부는 교사교육을 3년제 유치원 교사교육으로의 통합을 진행했다.

3. 유아교육 · 보육 통합의 과정

노 동당 정부의 육아서비스에 관련한 첫 조치는 보육시설에 관한 개정 규정을 보급하는 것이었다. 즉, 보육시설은 유능한(전문적인) 교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교육장관인 Russell Marshall이 소집한 보육과 교육에 관한 공개토론이었다. 세 번째 중요한 조치는 1986년에 만들어진 “[부서별] 책임의 재배분”에 관한 것이었다. 네 번째 조치는 1988년부터 시작된 제3의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양성교육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통합정책연혁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1984 노동 선언서 완료

1984 보육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설정

1985 보육시설에 관한 개정안

1985 보육시설: 결과와 기회에 관한 보고서

1985 보육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연수

1985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행정의 전환을 위한 합동 장관급 특별전담반

1985 보육 및 유아교육에 관한 장관급 공개토론

-
- 1986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보육 전환을 위한 법률의 수정
 - 1986 3년 교육을 통한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특별 전담반 연구
 - 1986보육 교사 양성과정을 위한 특별 전담반 연구
 - 1987보육과 유치원 서비스 위한 3년 양성교육정책 수립
 - 1988더 나아가는 교육정책: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보육 특별전담반의 연구
 - 19885세 이전 여섯가지(Six Before Five): 뉴질랜드 버전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정식 연구서 발표
 - 1988 Te Kohanga Reo 연구 보고서의 정부차원검토
 - 1989 5세이전 여섯가지(Six Before Five) 정책실행 위원회의 연구
 - 1990Te Kohanga Reo연구를 포함한 모든 ECS에 대한 공적 재정투자계획 수립
 - 1990보육과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공인교사 자격요건에대한 단계별 정책수립

뉴질랜드 정부는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 서비스의 법적 의
무이전을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을 소집하여 합동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5년 12월 교육부
장관 주관 보육과 교육에 관한 공개토론포고서에 의하면, 1986년 7
월까지의 이전 완료 법안을 공시하였다.

교육부는 보육 공무원들, 보육 관련 서류, 재정보조 등의 이전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질 높은 규정을 보장하기위
한 재정보조와 교사교육의 형평성문제를 설정하는 작업까지 추가하
였다. 교사 양성문제는 1985년 5월에 ECCE 측에서 선출한 구성원과
일주일에 걸쳐 논의하였다.

5년간의 결친 작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육과 유치원 교사 교육연한의 통합
- 교사교육 방법에서부터 교사자격까지의 인사행정통합
- 양성과정의 핵심 교과 과정 통합
- 교사 양성을 위한 재정보조의 형평성
-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급여의 형평성

의회에서의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개토론은 교사 양성과정의 확장과 통합에 대해 큰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관련자의 직위와 ECCE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전에는 유아교사 교육과 자격은 일반교사의 교육 및 자격과는 비교할만한 것이 되지 못했으나, 1986년 유치원교사의 동등한 보수 보장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되었으며 교육부장관에 의해 실행되었다. 교육부장관은 관련종사자들에게 유치원 교사를 위한 3년 교육프로그램과 유아교육 관련 종사자들과 교사들의 통합연수까지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내각은 3년의 보육 및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하도록 최종결정하였다.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뉴질랜드 정부내각은 광범위한 교육행정부의 개혁을 단행하고 그 개혁의 일부로, 정부 내각 사회자본위원회(the Cabinet Social equity Committee) 내에 보육·유아교육에 관한 특별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9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모든 재정보조 정책이 있어서 공정하게 보육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부 산하 모든 서비스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별도 지원 포함, 자녀당, 시간당 지원까지 공평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육아정책 개관 및 동향

1. 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 유형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이 허가하는 육아지원 서비스로는 유치원, 놀이센터, 보육시설, 가정 보육, 통신학교(the Correspondence School), 원주민 서비스: 코항가 레오(kohanga reo) 등이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출생에서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 연령 기 아동에 대한 영유아교육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가 면제된 곳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2세 이하의 영아에 대해 보조금의 수준이 높고, 아동 대 성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차이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뉴질랜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상당한 자발적 참여와 기금으로써 비정부기구에 의해 운영된

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몇몇 보육시설은 사립학교나 대학교(학생인 부모가 공부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정부 지원 시설은 따로 있다. 물론 병원 신하의 보육서비스도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1993년 초 이래, 통신학교(Correspondence School)도 정부로부터 모든 자금을 지원받고 운영되었다. 유치원은 주(州) 법령(1988)에 적용을 받는 바, 이는 정부가 임금을 지불하고 조건을 협상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ECS(Early Childhood Service)의 자산에 대해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정부는 ECS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는 ECCE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이들 서비스 기관 자체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위원회, 이사회, 소유자 집단 등이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아 하게 된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프로그램 형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면 크게 교사주도형(teacher-led)과 부모주도형(parent-l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주도형 서비스로는 보육시설, 규모는 작으나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오리족이나 폴리네시아인을 위한 서비스, 무료 유치원, 통신학교와 가족시설(Family-based service) 또는 가정시설(Home-based service) 등이 있다.

그 외 교사주도가 아닌 부모주도 유아교육 기관으로는, 마오리족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인 코항가 레오(Kohanga Reo),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놀이센터(Playcentres) 등이 있다. 또한 허가를 받는 놀이집단(playgroups)이

있는데, 이는 주당 1-3회 정도 만나는 부모-아동 모임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유형을 발생 순서대로 본다면, 뉴질랜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 1)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혹은 Home-based service): 영유아 교사 자격이 있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서 가정시설 교육자 네트워크나 교육자 집단을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관리자는 허가된 시간 동안 승인된 가정에서 교육자가 보육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배당하는 역할을 한다.
- 2) 보육시설(Childcare centers): 영아와 만3, 4세, 소수의 5세가 이용하고 있는 ECE기관으로, 민간 서비스나 비영리 지역사회 설립 등 소유자 및 관리자가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상업적이고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도 하며, 몬테소리와 같은 특수한 특성을 지닌 협회와 제휴하기도 한다. 회기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종일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시간제도 이용하는 곳도 있다. 일부는 기업이나 단체(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유아학교 등)의 부속 기관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 3) 무료 유치원(Free kindergartens): 3-4세 유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주로 회기를 두고 운영한다.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자이고 지역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뉴질랜드의 무료 유치원은 3세부터 취학 연령까지 아동을 위한 반일반과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고, 반일반 유치원은 자격을 갖추고 등록된 교사만

이 채용된다.

- 4) 놀이센터 (Playcentres): 부모협동을 통해 회기별로 운영되는 곳으로,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등록 영유아의 부모들이며 지역 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 5) 사립 초등학교 부설 유아학교 교실 (pre-school classes)
- 6) 통신학교 영유아 서비스: 주립 통신 학교가 제공하는 원거리 유아 교육 서비스이다. 통신학교는 장거리, 질병, 장애, 특별한 환경 등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등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장거리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통신학교 또한 자격 있고 등록된 교사만 일할 수 있다.
- 7) 마오리 원주민 센터(Nga kohanga reo): 마오리족 원로들이 관할하고 마오리족 언어로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보육 센터로,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영유아들의 부모나 부족 원로들이다.
- 8) 폴리네시아인 영유아 센터: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위해 일부 시간이라도 태평양 언어로 운영하는 센터로, 교사와 관리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 9) 폴리네시아인 보육서비스(Anau Ako Pasifika): 태평양 국가에서 이주한 가족들을 위한 인가보육서비스이다.

2. 교육비·보육료 지원과 질적 수준의 관리

1 877년 교육 법령이 제정된 이래로, 뉴질랜드 학교 교육은 무료 의무교육이며 비종교적이다. 6~16세는 학교에 전일 출석할 의

무가 있어, 학생들은 만5세가 되면 주(州)의 학교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5번째 생일 전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Early Childhood Services, ECS)는 120년이 넘게 공립과 사립 기관들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21세기 초 이래 정부는 공립육아지원서비스에 보조금을 주어 왔고, 민간 보육기관에도 수십 년 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조금 정책이 유치원과 놀이센터(playcentres)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은 각기 다른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동 일인당 지원금으로는 유치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0-11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정부예산은 13억 달러이며, 이는 이전 해에 비해 1억 7백만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정부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³⁾ 예산을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최근 ECE 교사 공급 정책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4년간 4천2백7십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케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시설에서 채용하고 있는 교사의 80%이상 99%가 정식 등록된 교사인 시설과 100% 등록된 교사인 시설로 구분하여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던 것을, 2011년 2월을 기해 80%이상 채용 한 가지 기준으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2013년까지는 모든 시설이나 기관의 영유아 교사 80% 이상이 등록된 정식교

3) 뉴질랜드에서는 1986년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 관할로 행정적 통합을 이룬 이후 EOC(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라는 용어 대신 ECE(Early Childhood Edu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로 채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지원 정책을 완화한 결과이다. 절감된 예산은 현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ECE 서비스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기관의 교사 수급과 연계하여 지원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바, 지원대상 기관이 질 좋은 교사를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냐에 따라 이동당 지원액을 달리 제공하고 있다. 교사의 수준이 ECE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이 있고 정식 등록된 교사를 쓰도록 간접적으로 시설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ECE funding subsidy)은 아동 연령에 따라 2세 미만과 2세 이후로 구분하여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며, 다음에 제시된 <표 5>는 시간당 아동 한 명에게 주어지는 지원액을 시설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2011년 2월 1일 이후에는 일반적인 종일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에 채용된 교사의 80% 이상이 등록된 정식교사인 상황일 때, 한 아동당 \$11.80/h(2세 미만), \$6.53/h(2세 이상)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등록 교사의 비율이 낮을수록 비용지원액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비용지원율이 높은 서비스로 알려진 반일제 유치원의 경우는 2세를 기준으로 \$12.46와 \$6.25를 지급하여 모든 아동이 무료로 다니고 있으며, 기타 반일제 기관이나 시설의 경우 2010년 변경된 80%+ 규칙을 적용하여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진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이나 놀이센터, 원주민 육아서비스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경우 등록교사 채용 비율보다는 질적 수준 평가에서 높은 곳(고급 서비스)과 낮은 곳(표준 서비스)으로 구분하여 지원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교육비·보육료 지원 외에, 교육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또 하나의 제도는 『20시간 ECE』 지원이다. <표 5>에서 보듯이 교육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별도로 주당 20시간까지 모든 아동이 교육·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모는 교육비·보육료 지원 제도와 20시간 ECE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뉴질랜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다니는 모든 3-4세 아동들에게 일일 6시간 이내, 한 주에 20시간까지의 ECE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모든 교사주도 ECE 시설과 마오리족 서비스(코항가 레오)와 놀이센터에서 적용 가능하다. 부모는 등록 시간 중 어떤 시간과 요일을 이 지원비용으로 충당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다른 지원(CCS 등)과 시간을 달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5〉 뉴질랜드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ECE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

| 시설내 등록교사 비율 | 2010. 6. 30. 이전 | | | 2010. 7. 1. 이후 | | | 2010. 10. 1. 이후 | | | 2011. 2. 1. 이후 | | |
|----------------------------|-----------------|----------|-------------|----------------|----------|-------------|-----------------|----------|-------------|----------------|----------|-------------|
| | 2세 미만 | 2세 이상 | 20시간 ECE | 2세 미만 | 2세 이상 | 20시간 ECE | 2세 미만 | 2세 이상 | 20시간 ECE | 2세 미만 | 2세 이상 | 20시간 ECE |
| 보육시설 증일반 | | | | | | | | | | | | |
| 100% | 12,94 | 7,79 | 12,35 | 13,06 | 7,86 | 12,45 | 13,35 | 8,08 | 12,73 | N/A | N/A | N/A |
| 80-99% | 12,16 | 6,91 | 11,42 | 12,27 | 6,97 | 11,52 | 12,54 | 7,13 | 11,78 | N/A | N/A | N/A |
| 80%+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11,80 | 6,53 | 11,12 |
| 50-79% | 10,36 | 5,46 | 9,83 | 10,46 | 5,51 | 9,92 | 10,68 | 5,63 | 10,14 | 10,68 | 5,63 | 10,14 |
| 25-49% | 8,35 | 4,35 | 8,64 | 8,43 | 4,39 | 8,72 | 8,62 | 4,49 | 8,91 | 8,62 | 4,49 | 8,91 |
| 0-24% | 7,14 | 3,62 | 7,88 | 7,21 | 3,65 | 7,95 | 7,37 | 3,73 | 8,13 | 7,37 | 3,73 | 8,13 |
| 회기별(반일반)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 | | | | | | | | | | | |
| 100% | 12,09 | 6,07 | 7,26 | 12,20 | 6,12 | 7,32 | 12,46 | 6,25 | 7,49 | 12,46* | 6,25* | 7,49* |
| 80-99% | 10,80 | 4,95 | 6,30 | 10,90 | 5,00 | 6,36 | 11,14 | 5,11 | 6,50 | N/A | N/A | N/A |
| 80%+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10,49 | 4,76 | 6,13 |
| 50-79% | 9,24 | 4,12 | 5,40 | 9,33 | 4,16 | 5,45 | 9,54 | 4,25 | 5,57 | 9,54 | 4,25 | 5,57 |
| 25-49% | 7,53 | 3,55 | 4,77 | 7,60 | 3,58 | 4,81 | 7,77 | 3,66 | 4,92 | 7,77 | 3,66 | 4,92 |
| 0-24% | 6,55 | 3,19 | 4,41 | 6,61 | 3,22 | 4,45 | 6,76 | 3,29 | 4,55 | 6,76 | 3,29 | 4,55 |
| 하한액 | 6,51 | 3,26 | 4,41 | N/A | 3,26 | N/A | N/A | 3,33 | N/A | N/A | 3,33 | N/A |
| 가정보육시설교사주도 | | | | | | | | | | | | |
| 고급 | 7,91 | 4,24 | 8,83 | 7,97 | 4,27 | 8,89 | 8,15 | 4,36 | 9,09 | 8,15 | 4,36 | 9,09 |
| 표준 | 6,94 | 3,75 | 8,34 | 6,99 | 3,78 | 8,40 | 7,14 | 3,87 | 8,59 | 7,14 | 3,87 | 8,59 |
| 놀이센터(부모주도) | | | | | | | | | | | | |
| 고급 | 8,40 | 4,22 | N/A | 8,45 | 4,25 | 5,08 | 8,63 | 4,34 | 5,19 | 8,63 | 4,34 | 5,19 |
| 표준 | 7,35 | 3,70 | N/A | 7,40 | 3,72 | 4,55 | 7,56 | 3,80 | 4,65 | 7,56 | 3,80 | 4,65 |
| 테 코항가레오(교사주도 시설 제외) | | | | | | | | | | | | |
| 고급 | 8,40 | 4,22 | 7,88 | 8,45 | 4,25 | 7,93 | 8,63 | 4,34 | 8,11 | 8,63 | 4,34 | 8,11 |
| 표준 | 7,35 | 3,70 | 7,42 | 7,40 | 3,72 | 7,47 | 7,56 | 3,80 | 7,64 | 7,56 | 3,80 | 7,64 |
| 인허놀이집단과 비허가서비스 | | | | | | | | | | | | |
| 놀이집단 | 1,37 | 1,37 | N/A | 1,40 | 1,40 | N/A | 1,40 | 1,40 | N/A | 1,40 | 1,40 | N/A |

주: *은 유치원에만 적용됨.

3.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와 보조금

가. 육아지원제도

1) 모성휴가(또는 유급부성휴가)

가) 기간: 14주

나) 지급액

급여의 100%가 지급되나, 부성 휴가인 경우 최대 주당 NZ\$407.36(세전)를 넘지는 못한다. 최소 임금으로 10시간 근로 소득보다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주당 \$125.00를 지급받는다. 이는 국고 지원으로 충당된다.

다) 사용 시기

- 여성인 경우 출산예정일 이전 6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경우나 산모가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좀 더 일찍 모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진단이 있었거나 고용주가 조기 모성휴가를 권했을 경우에 산모는 출산 이후 8주 동안은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휴가 일수는 당연히 연장되게 된다.
- 고용주나 임신부는 출산 이전 언제라도 모성휴가를 시작할 것을 협의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모성휴가 급여 모두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신부의 자녀가 입양될 예정인 경우 입양할 양부모도 생모와 함께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산모의 죽음 등 특별한 경우에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 모성휴가 기간 이전에도 임신부는 임신과 관련한 이유(예를 들면 태내 검진 등)로 10일 동안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복 고용이나 훈련이 필요한 수련이나 주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라) 이용 자격

- 주당 평균 최소 10시간 또는 매주 최소 한 시간, 혹은 매달 40시간 동일 직장에서 일하는 임신부이며 출산예정일 6~12개월에 있는 경우
- 주당 최소 10시간 일을 하는 자영업자 임신부의 경우

2) 부성휴가

가) 기간: 경우에 따라서 1~2주

나) 지급액: 무급

다) 사용 시기

부성휴가는 출산 예정일 앞뒤 21일 내에서 어떤 때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사용가능하다.

라) 이용 자격

출산예정일 직전 6개월동안 최소 주 10시간 평균 근무하고 매 주 한 시간 이상 또는 매달 40시간 이상 동일 고용주 하에서 근무했을 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출산예정일 직전 6 내지 12개월간 최소 주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3) 부모휴가(연장 휴가)

가) 기간: 출산 후 12개월내에 최고 52주까지 가능. 이 때 모성휴가는 포함이 되고 부성휴가는 부가적인 것이다.

나) 지급액: 무급

다) 사용 시기

- 휴가는 부모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동시에 또는 연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 이 휴가는 모성 또는 부성에 잇달아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로 복귀한 이후에 다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만1세가 되거나 입양 후 1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가정 사정상의 융통성 있는 사용은 불가능하다.

라) 이용 자격

- 연장휴가는 동일 고용주 하에서 평균 주당 10시간, 그리고 매주 최소 한시간이나 매달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출산이나 또는 6세 이하 아동을 입양하기로 한 경우 12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4) 육아 휴가 또는 양육인 휴가(Childcare leave or career break)

- 제도 없음

나. 육아 보조금

영유아를 둔 어머니가 일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와 관련한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로, 이는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서 관장하는 정책사업이다. 영유아를 둔 근로자 부모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해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보육보조금(Childcare Subsidy: CCS)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들과 영유아 보육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조금제도이다. 아동장애수당을 받는 경우는 6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대개의 경우 한 주에 9시간까지 지원을 받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한 주에 5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주에 9시간 이하로 지원이 다시 제한된다(이 때 아동장애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

-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승인된 훈련과정 중에 있는 경우
- 기관이 요청한 활동에 관련된 경우
- 밤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인 경우
-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병원에 있거나 장애수당을 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방과후 교육·보육 보조금(OSCAR Subsidy)

OSCAR(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 Subsidy) 보조금은 학교 내 보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보호와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13세 취학 아동들이 대상이고,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18세까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프로그램의 before school 과 after school의 경우는 한 주에 20시간까지, 방학프로그램의 경우 한 주에 5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장애수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오스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 이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아동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 병원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경우

※ CCS 보조금과 OSCAR 보조금 수혜요건

- 아이의 주양육자이어야 함
- 가족의 수입이 중·하류에 속해야 함
-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함
- 아이가 한 주에 적어도 3시간 care를 받아야 함

※ 보육 보조금 지원액(CCS)

가족의 수, 수입, 아이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고, 지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다음의 <표 6>은 아동 한 명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6〉 시간당 자녀별 보육보조금 지원액

| 자녀수 | 총 주간 수입 | 아동별 보육지원액(시간당) |
|-------|--------------------------|----------------|
| 1명 | \$ 1200.00 미만 | \$ 3.77 |
| | \$ 1200.00 ~ \$ 1,299.99 | \$ 2.62 |
| | \$ 1300.00 ~ \$ 1,399.99 | \$ 1.46 |
| | \$ 1400.00 이상 | - |
| 2명 | \$ 1380.00 미만 | \$ 3.77 |
| | \$ 1380.00 ~ \$ 1,489.99 | \$ 2.62 |
| | \$ 1490.00 ~ \$ 1,599.99 | \$ 1.46 |
| | \$ 1600.00 이상 | - |
| 3명 이상 | \$ 1540.00 미만 | \$ 3.77 |
| | \$ 1540.00 ~ \$ 1,669.99 | \$ 2.62 |
| | \$ 1670.00 ~ \$ 1,799.00 | \$ 1.46 |
| | \$ 1800.00 이상 | - |

출처: <http://www.workandincome.govt.nz>

주: 2010년 10월 1일 기준 자료임.

4. 교사교육

뉴질랜드 교사교육의 기원은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교사양성대학(Teacher Training College)이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사범대학(Teachers College)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90년경에 교육개정 법령 의해 교육대학(College of Education)으로 개명하여 교사양성 및 재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2005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교육대학은 인근 종합대학으로 통합되어 교육학 부로서 뉴질랜드 전체의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최창우, 2010).

교육학부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대체로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17세의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3개 과목의 성적이 “C” 이상이어야 하고 Form 6수료증에서 영어나 마오리어가 적어도 5등급은 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교사양성교육 제도를 Initial Teacher Education(ITE)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교사와 초·중·등교사, 그리고 원주민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사 양성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ITE교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년 또는 4년간 대학(university, college) 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3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경우(polytech 등), 1년간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1) 교육학사 과정(undergraduate degrees)

3년 또는 4년 풀타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사교육, 초등교사교육, 마오리 매체교육 전공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 교육졸업증 과정(undergraduate diplomas)

3년 풀타임 과정으로 학생들은 매년 정규적으로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6년(72개월)내에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파트타임으로 이수될 수 있다.

(3) 대학원 졸업증 과정(graduate diplomas)

종합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1년 풀타임 혹은 2년간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생실습은 3년 풀타임 과정동안 1학년 첫 학기에 3주간, 2학기에 4주, 2학년 전·후 학기에 각각 4주, 마지막 3학년 전 학기에 4주, 후

학기에 3주간 이루어짐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 총 21주의 교생실습을 갖는다⁴⁾.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생실습 기간의 2배가 넘는 기간으로, 현장의 실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교사 임용절차를 보면, 각급학교의 이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지원서와 추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에 임하게 된다.

TTE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학습과 교육 이론, 직업 교육, 실습, 문화연구에 대한 교육의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뉴질랜드 전역에서 다양한 교육 환경에 적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육기준법 2001이 입안된 이후 뉴질랜드교원위원회가 설립되어 (2002) 교원자격의 질 관리 및 교원 전문성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뉴질랜드교원위원회는 교육기관에서 교원이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획득하여야 할 실무 자격증 발급과 교원 등록 기준 뿐만 아니라 30개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원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심사하여 매 5년마다 양성기관을 인가하는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teacherscouncil.govt.nz>).

교원등록증은 영구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등록은 5년 후, 추인대상 등록은 3년 후, 정식등록은 실무자격증 만기 후 5년 안에 종료된다. 또한 실무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교원등록증의 효력을 상실한다(강대구, 박선형, 2005).

⁴⁾ 학기별 실습 기간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교사양성 대학인 '오클랜드교육대학'의 과정을 참고로 제시하였음.

5. 유아교육 · 보육 기관 평가⁵⁾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하 ECE)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초·중·고 학교 평가는 교육평가청(ERO)에서 주도하고 있고, 이 기관은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속해 있다. 즉,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교육부가 아닌 독립적인 타 부서의 관할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평가가 기관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를 결합하여 종합한다는 점이다. 모든 학교와 ECE 기관은 3~5년 주기로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자체평가를 통하여 문제가 드러난 기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적인 방문평가 시에도 자체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실사를 한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에서 주관하는 교육기관 평가의 일차적 목적은 뉴질랜드 교육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유용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당사자들이 교육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돕는데 있다.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의 기구가 아닌 공공서비스부 산하의 교육평가청이 기관 평가를 관장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적 시각에 입각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유 · 초 · 중등 교육기관은 교육평가청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고등교육기관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평가청의 평가 대상이 된다. 교육평가청은 개별 기관 내에서 아동들의 교육이 이루

5) 본 장은 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개발 2001/3.4월호 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어지는 현황과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공동체의 역할을 점검함으로써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기관평가는 상대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기관별 순위를 매기지도 않는다.

평가절차를 보면, 평가단의 방문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별 기관은 ‘자체평가 질문지(Self Review Questionnaire)’를 완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 실태 보고서(Annual Declaration)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여기에 교육평가청의 방문 실사 평가가 더해진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관을 등급화하게 되고 교육평가청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관련된 기관의 경영진,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 또한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 현황⁶⁾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인가 육아지원 서비스 (licensed ECE services) 이용 영유아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다. 또한 서비스를 더 오랜 시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였으며, 부모들은 종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자격이 있고 등록된 유아교육 교사들의 수와 채용 비율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1. 육아지원 기관 현황

2010년 육아지원 서비스의 수는 5,152개(인가와 비인가 서비스 포함)로 2006년에 비하여 656개 (14.6%)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인가 육아지원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특히 가정 보육 서비스와 보육시설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⑥ 출처: <http://www.educationcounts.govt.nz>

〈표7〉 서비스 유형별 시설 수(2006-2010)

| 서비스유형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06-10차이 | |
|---------------------------------------|--------------|--------------|--------------|--------------|--------------|------------|-------------|
| | | | | | | 수 | % |
| 인가서비스 | | | | | | | |
| Kindergarten | 619 | 618 | 622 | 626 | 632 | 13 | 2.1 |
| Playcentre | 474 | 466 | 464 | 461 | 461 | -13 | -2.7 |
| Education and Care | 1,842 | 1,982 | 2,047 | 2,236 | 2,419 | 577 | 31.3 |
| Home-based service | 202 | 227 | 244 | 297 | 307 | 105 | 52.0 |
| Kōhanga Reo | 486 | 470 | 467 | 464 | 463 | -23 | -4.7 |
| Correspondence School | 1 | 1 | 1 | 1 | 1 | 0 | 0.0 |
| Casual Education and Care | 41 | 36 | 36 | 38 | 29 | -12 | -29.3 |
| Hospital-based | - | - | - | - | 9 | 9 | N/A |
| 소계 | 3,665 | 3,750 | 3,881 | 4,123 | 4,321 | 656 | 17.9 |
| 비인가(허가면제) 서비스 | | | | | | | |
| Playgroups | 667 | 608 | 656 | 672 | 726 | 59 | 8.8 |
| Pacific Island Early Childhood Groups | 93 | 62 | 53 | 44 | 51 | -42 | -45.2 |
| Nga Puna Kohungahunga | 41 | 30 | 32 | 27 | 29 | -12 | -29.3 |
| Playcentres | 22 | 22 | 24 | 24 | 25 | 3 | 13.6 |
| Licence-exempt Kōhanga Reo | 8 | 7 | 3 | - | - | -8 | -100.0 |
| 소계 | 831 | 729 | 768 | 767 | 831 | 0 | 0.0 |
| 총계 | 4,496 | 4,479 | 4,649 | 4,890 | 5,152 | 656 | 14.6 |

주: 각년도 7월 1일 기준 자료임.

2.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이용 영유아수⁷⁾

2010년(7월 1일 기준)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인가와 비인가 서비스 포함)의 총 이용 영유아 수는 211,426명이다.

2010년도 인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 영유아 수는 188,924명으로

7)이용 영유아 수는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중으로 집계됨.

2006년도(165,254명)에 비하여 23,670명(14.3%) 증가하였다. 특히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서비스 이용 유아가 급증하였다. 이들 서비스는 종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는 6,835명(15.4%) 감소하였으며, 유치원은 예전부터 회기별(sessionally based)반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8〉 인가 서비스 유형별 이용 영유아 수(2006-2010)

| 서비스유형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06-10차이 | |
|---------------------------|---------|---------|---------|---------|---------|-----------|-------|
| | | | | | | 수 | % |
| Kindergarten | 44,435 | 43,695 | 41,487 | 39,346 | 37,600 | -6,835 | -15.4 |
| Playcentre | 14,888 | 14,664 | 14,929 | 15,171 | 15,049 | 161 | 1.1 |
| Education and Care | 86,059 | 91,733 | 97,756 | 101,424 | 109,204 | 23,145 | 26.9 |
| Home-based service | 9,802 | 11,073 | 13,065 | 15,054 | 17,084 | 7,282 | 74.3 |
| Kōhanga Reo | 9,493 | 9,236 | 9,165 | 9,288 | 9,370 | -123 | -1.3 |
| Correspondence School | 577 | 737 | 591 | 627 | 617 | 40 | 6.9 |
| Casual Education and Care | - | - | - | - | - | - | - |
| 계 | 165,254 | 171,138 | 176,993 | 180,910 | 188,924 | 23,670 | 14.3 |

주: 1) 각년도 7월 1일 기준 자료임.

2) Casual Education and Care의 경우 정규 등록이 없기 때문에 집계가 불가능함.

2010년(7월 1일 기준)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인가와 비인가 서비스 포함)의 이용 영유아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 미만 11,764명(5.6%), 1세 30,098명(14.3%), 2세 43,354명(20.5%), 3세 62,400명(29.6%), 4세 61,476명(29.1%), 5세 1,926명(0.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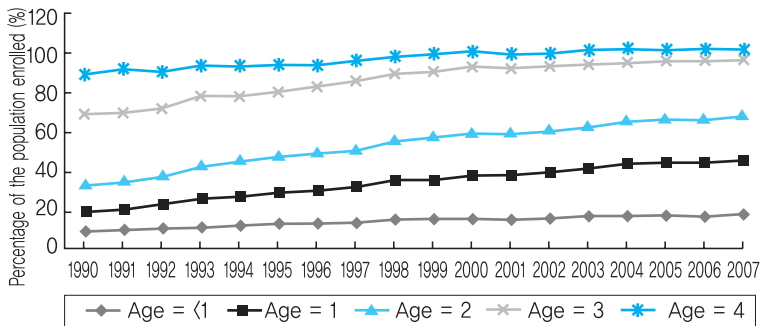
인가 서비스의 연령별 이용 영유아 수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2006년도 이용 영유아 수와 비교해보면 1세와 1세 미만의 경우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 3, 4세의 경우도 1세와 1세 미만 증가율 보다는 작지만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9〉 연령별 인가 서비스 이용 영유아 수(2006-2010)

| 연령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06-10차이 | |
|-----------|---------|---------|---------|---------|---------|-----------|------|
| | | | | | | 수 | % |
| 1세 미만 | 6,721 | 7,803 | 7,894 | 7,972 | 8,704 | 1,983 | 29.5 |
| 1세 | 20,390 | 21,783 | 23,593 | 23,917 | 24,771 | 4,381 | 21.5 |
| 2세 | 32,106 | 33,040 | 33,707 | 35,293 | 36,873 | 4,767 | 14.8 |
| 3세 | 49,767 | 51,918 | 53,298 | 54,541 | 57,729 | 7,962 | 16.0 |
| 4세 | 54,406 | 55,057 | 57,278 | 57,506 | 59,141 | 4,735 | 8.7 |
| 5세 | 1,864 | 1,537 | 1,223 | 1,681 | 1,706 | -158 | -8.5 |
| 계 | 165,254 | 171,138 | 176,993 | 180,910 | 188,924 | 23,670 | 14.3 |
| 3 & 4세 소계 | 104,173 | 106,975 | 110,576 | 112,047 | 116,870 | 12,697 | 12.2 |

주: 각년도 7월1일 기준 자료임.

아래의 [그림 1]은 연령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는 서비스 유형별 정원 충족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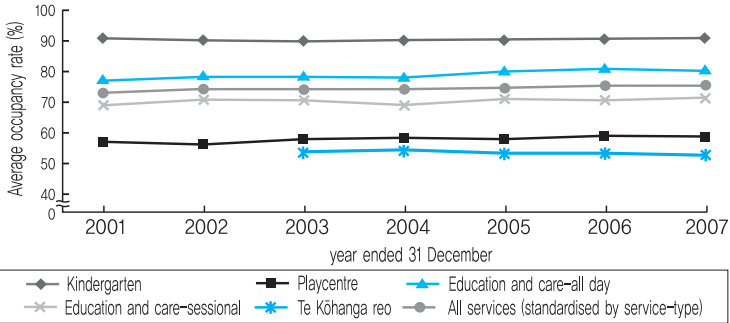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율(1990-2007)

출처: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series/>

주: 1) 5세는 제외함

2) 아동이 한군데 이상의기관에 다니는 경우가 있어 이중으로 포함된 경우 일부 연령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음.



[그림 2] 서비스 유형별 정원 총족률(2001-2007)

출처: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series/>

나. 이용시간

2010년 인가 육아지원서비스(Kōhanga Reo, 통신헌교, 일시 보육시설 제외^{*)} 이용 시간은 주 20.1시간으로 2006년도에 비하여 3.2시간(18.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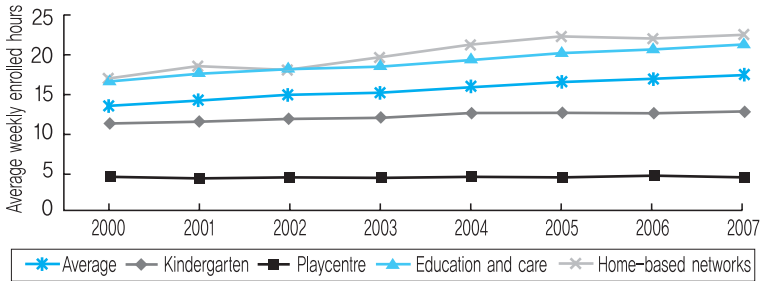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서비스의 경우 이용 시간이 각각 23.7시간, 21.9시간으로 길었으며, 놀이센터의 경우 4.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2006년도 대비 이용시간을 보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시간은 2006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10〉 인가 서비스 유형별 평균 이용시간(2006-2010)

| 서비스 유형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06-10 차이(%) |
|--------------------|------|------|------|------|------|---------------|
| Kindergarten | 12.6 | 12.6 | 13.4 | 14.2 | 15.1 | 19.8 |
| Playcentre | 4.4 | 4.3 | 4.2 | 4.0 | 4.0 | -9.1 |
| Education and care | 20.8 | 21.5 | 22.9 | 23.5 | 23.7 | 13.9 |
| Home-based service | 2.2 | 2.5 | 2.8 | 2.5 | 2.1 | -0.5 |
| 계 | 16.9 | 17.6 | 18.9 | 19.5 | 20.1 | 18.9 |

주: 각년도 7월1일 기준 자료임.

* 이들 유형의 경우 이용시간을 집계할 수 없음.



[그림 3] 시설 유형별 주간평균 이용시간 (2000-2007)

출처: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series/>

주: Kōhanga reo 서비스는 주간 이용 시간이 취합되지 않아 제외됨.

다. 20시간 교육·보육 서비스(20 Hours ECE)

2007년 7월 1일부터 「20시간 육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Kōhanga Reo와 교사주도 교육·보육 서비스(유치원, 보육시설, 가정보육)를 이용하는 3, 4세 유아들이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무료로 육아지원(ECE)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20시간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3~5세 유아는 총 97,841명이었고 이는 교사주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전체 3~5세 유아의 90.9%이다. 2009년도에 비하여 7.3%(6,690명) 증가하였다.

(표 11) 20시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3~5세 유아수(2009-2010)

| 서비스 유형 | 2009 | | 2010 | |
|--------------------|------------------|-------------|------------------|-------------|
| | 20시간 이용 3~5세 유아수 | 전체 3~5세 유아수 | 20시간 이용 3~5세 유아수 | 전체 3~5세 유아수 |
| Kindergarten | 36,889 | 38,118 | 35,311 | 36,409 |
| Education and care | 49,136 | 58,174 | 56,861 | 64,160 |
| Home-based service | 5,126 | 6,449 | 5,669 | 7,110 |
| 계 | 91,151 | 102,741 | 97,841 | 107,679 |

주: 1) 각 년도 7월 1일 기준 자료임.

2) Kōhanga Reo의 20시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유아수는 집계되지 못하였음.

2010년 3~5세가 2,922개의 서비스에서 「20시간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시간 육아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의 95.9%이다. 2009년에 비하여 8.1%(219개) 증가하였다. 20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중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 Kindergarten로 100%이었다.

〈표 12〉 「20시간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기관의 수(2010년)

| 서비스유형 | 20시간서비스이용 유아가 있는 기관수 | 20시간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수 | % |
|--------------------|----------------------|------------------|-------|
| Kindergarten | 632 | 632 | 100.0 |
| Education and care | 2,003 | 2,116 | 94.7 |
| Home-based service | 287 | 298 | 96.3 |
| 계 | 2,922 | 3,046 | 95.9 |

주: 7월1일 기준 자료임.

3. 교사 현황

교사주도 서비스에는 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 유치원 가정 보육시설, 통신학교등이 있다.

가. 교사 수

2010년(7월 1일 기준) 교사주도 시설에서 상근하는 교직원 수는 19,901명으로 2009년도에 비하여 전일 근무 직원은 0.4%(57명) 감소하였고, 시간제 근무 직원은 41.2%(1,561명) 증가한 수치이다. 전일 근무는 주당 25시간 이상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교사 자격

2010년 교사주도 서비스의 교직원 중 ECE 교사 자격을 가진 비율은 66.8%(13,294명)로 2009년에 비하여 12.9%(1,514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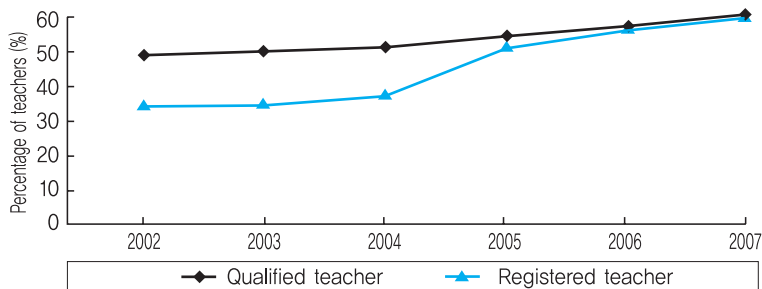
(표 13) 교사주도 교육·보육서비스의 교사수(2010년)

| 서비스유형 | ECE 자격 있음 | | ECE 자격 없음 | |
|---------------------------|-----------|-------|-----------|------|
| | 교직원 수 | % | 교직원수 | % |
| Kindergarten | 2,363 | 95.9 | 101 | 4.1 |
| Education and care | 10,347 | 61.6 | 6,460 | 38.4 |
| Home-based service | 464 | 99.4 | 3 | 0.6 |
| Correspondence School | 18 | 100.0 | - | - |
| Casual Education and care | 85 | 66.9 | 42 | 33.1 |
| Hospital-based | 17 | 94.4 | 1 | 5.6 |
| 계 | 13,294 | 66.8 | 6,607 | 33.2 |

주: 1) 7월1일 기준 자료임.

2) ECE자격을 소지한 교사는 NZTC(New Zealand Teachers Council) 승인 자격 소지자를 의미함. 다른 유형의 자격을 소지한 직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

다음의 [그림 4]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중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과 국가에 등록된 교사의 비율을 6년간에 걸친 변화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교사주도 시설 근무 교사의 자격증 소지 및 등록 비율 (200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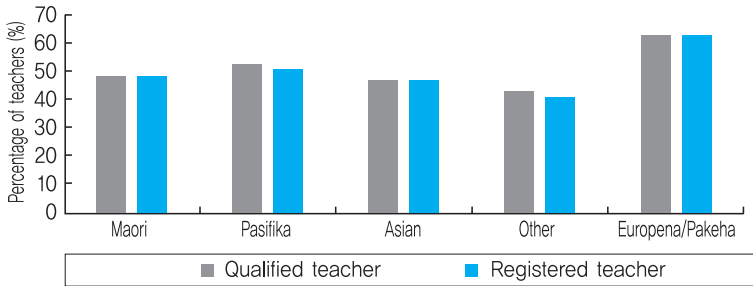
출처: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series/>

주: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모는 제외함.

다. 교사의 인종 배경

교사주도 교육·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총 19,901명의 교사 중 71.7%(14,269명)가 유럽인 또는 유럽계 백인(Pakehā), 8.0%(1,595명)가 폴리네시아인(pasifika), 8.3%(1,651명)가 마오리족, 9.1%(1,820명)가 아시아인, 2.8%(566명)가 기타 민족이다.

다음의 [그림 5]는 교사의 자격 소지 및 등록 여부를 인종별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교사인종 배경별 자격 및 등록현황 (2007)

출처: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series/>

주: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모는 제외함.

ECE를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전망⁹⁾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로 가는 길: 유아교육을 위한 10년 전략 계획(Pathways to the Future: Ngā Huarahi Arataki, A 10-Year Strategic Pla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에 나타난 ECE에 대한 정부의 비전은 모든 뉴질랜드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수준 높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다.

-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수한 ECE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 ECE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

⁹⁾ 본 장은 뉴질랜드 교육부(2007)가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에 발표한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에 근거하여 일부 발췌, 재정리한 내용임.

이러한 비전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EC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학습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우수한 ECE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아이들 간 상호작용의 질, 교육 기회 및 자원이 풍부한 환경, 부모와의 협력 정도 등 ECE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사들의 자격 및 성인 대 아동 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투자하여 우수한 EC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팀 업(Team Up)과 같은 정보제공 프로그램, 부모 지원 및 개발 프로그램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의 협력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ECE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ECE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ECE 보조금 지원 및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뉴질랜드의 다양한 ECE 서비스 제공자들(교육 및 보육시설, 가정학습 서비스, 유치원, 코항가 레오(Kohanga Reo), 놀이그룹, 놀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관련 법규 제정을 위한 노력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ECE 서비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부모, 가족, 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ECE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역사회 문화, 언어 및 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기타 여러 정부의 관련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ECE 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수한 품질의 ECE는 가족의 우선순위: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생 시작점을 제공하여 평생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목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최대한 많은 가정이 합리적 가격의 우수한 E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부모와 ECE 시설을 위한 보육 및 취업 선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10년 행동계 획인 삶, 보육, 직업을 위한 선택이라는 목표실현에 공헌할 수 있다.

1. 부모 지원 및 개발

뉴질랜드 정부는 교육부와 사회개발부를 통해 다양한 부모지원 및 개발(PSD: Parental Support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PSD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정 및 원주민확대가족(Whānau)들이 ECE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ECE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정과 ECE 서비스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18개 ECE 기관에 PSD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ECE 센터 기반 PSD 프로그램은 사회개발부가 주도하는 보다 광범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me)을 지원하는 서비스 패키지의 일부로 ECE센터의 부모/확대가족 지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3세 이하의 유아가 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국제 증거자료에 따르면, 부모 교육/지원과 ECE를 결합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아동들에게 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부모 중심적 또는 아동 중심적 프로그램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뉴질랜드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시험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는 정부가 이러한 유아 발전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ECE 재정 체계

2005년 4월에 시행된 새로운 ECE 재정 체계는 교육부가 ECE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 체계의 전체 목표는 비용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책정하고, ECE의 질적 수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많은 가정의 아동들이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우수한 ECE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 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지원

2005년 4월 1일 이래로 보조금 지원은 ECE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주요 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구조는 다양한 ECE 서비스의 구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교육부의 비용인(因)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유아교사의 자격과 종일제 운영이 가장 큰 비용 결정인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종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사-이동 비율을 보다 잘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교사 주도적인 서비스의 경우, 교사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에 등록된 교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보조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2012년까지 ECE 기관에 채용된 교사들을 모두 등록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교사주도 서비스 및 자격을 갖춘 코항가 레오(Te Kohanga Reo)에 20시간 무료 ECE(20 Hours Free ECE)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비용인(因)에 근거한 것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무료 ECE 혜택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앴으로써 보다 많은 아동들이 ECE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교사주도 서비스가 부모주도 서비스보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부모주도 서비스와 특정 시간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낮다는 것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으로, 부모들의 취업을 권장하거나 부모주도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놀이센터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은 2006년 예산 중 8.7%에서 9% 사이로 증가했으며, 2007년 예산에서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 코항가 레오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은 2007년 예산에서 13.2~13.7%로 증가했다.

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30시간 제한

보조금 지원은 주당 최대 30시간으로 제한되며, 기관 이용 시간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현재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개 발부가 관리하는 보육 보조금¹⁰⁾을 통한) 특정 보조금 지원과 일반 보조금 지원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ECE 보조금 지원 검토 시, 이러한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ECE 분야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간 제한이 ECE 시설들이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해온 ECE 보조금 지원이 주당 3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종일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ECE 기관들의 특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보조금도 있다. 예를 들어, 고립된 지역의 시설들을 위한 연간 추가 지원(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 제도를 통해 추가(top-up)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고립된 사골 지역에 사는 부모들도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CE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단체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시설들은 ECE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는 평등 보조금(Equity Funding)을 신청할 수 있다¹¹⁾.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체계(육아보조금 포함)를 통해, 더 높은 질적 수준의 ECE 제공 비용으로 인해 교육 참여 기회

10) 육아보조금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Working for Families 패키지의 일부이다. 직업을 갖고 있거나 훈련을 받는 부모들(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들)은 일주일에 최대 50시간에 대한 육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부모들은 일주일에 최대 9시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1) 평등 보조금(Equity Funding)의 구성요소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낮은 지역사회, 특별 요구사항, 영어 이외의 모국어 사용 영역 이외의 언어와 문화, 고립 등이다.

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법규 검토

200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ECE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ECE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간단명료해 졌으며, 서로 다른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진화한 다양한 형태의 ECE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제 시스템은 좋은 기준을 정립하고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가. 법적 조건

뉴질랜드의 육아지원 관련 법규정은 안전, 교사 고용(교사-아동 비율 및 자격), 교육자원, 시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ECE 서비스에서 준수해야 할 폭넓은 법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자격은 ECE의 품질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 중 하나이며, ECE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은 놀이센터에 대한 상이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정 하에서는 기준(Criteria)으로 불리는 3단계 시스템이 ECE 시설들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 등록제는 교사 자격이 ECE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연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사 주도적인 ECE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되었다. 2012년까지 모든 교사 주도 방식의 ECE 시설들은

고용하고 있는 전체 교사에 대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직업을 갖는 부모들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가족들이 교사 주도적 인 ECE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 규정과 ECE 시설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타 최소 규정을 통해, 부모들은 전문 교사들로 인해 자녀의 건강, 안전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부모주도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성인 아동 비율이 좋은 편이며,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주도 서비스와 동일한 자격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나. 정부지원의 다양화

뉴질랜드 정부는 보조금 지원과 법규정의 검토, 연구조사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준 높은 부모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부모가 주도하는 ECE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부모와 원주민 확대가족이 주도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연구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러한 연구조사는 정책 결정에 이용될 것이다.

법규정은 ECE 시설들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ECE 커리큘럼(Te Whariki)의 성과는 광범위하며, ECE 시설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각자 나름대로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CE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법규정이 제공하는 융통성 내에서 아동들의 ECE 참여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부모 및 확대가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모든 공인 ECE 시설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Criteria) 규정에 ECE 시설 면허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람직한 목표 및 관행(Statement of Desirable Objectives and Practices)” 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법적 시스템 하에서는 부모 주도식 놀이그룹을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면허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놀이그룹들이 ECE 지원이 가진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놀이그룹들이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그룹 부모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이끼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ECE 정책 개발은 모든 영유아들이 높은 수준의 ECE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부의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원 및 법규정은 ECE과 관련된 다양한 목표들과 정부의 기타 목표들 간 균형을 도모하고, ECE 분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려함으로써 부모들의 가지각색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참고문헌

강대구, 박선형(2005).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의 교원 자격 기준 동향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5(3), 141-175.

김창연(2009). 해외 성인지표 사례 분석: 뉴질랜드의 「변화를 위한 지표 Indicators for Change」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장근영(2010).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중심 교육체계, NYPI Youth Repor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복(2008).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부산교육*, 327, 150-159.

최창우(2010). 뉴질랜드의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수학교사교육.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A 수학교육*, 49(3), 287-298.

한국교육개발원(2001). 해외의 학교평가제도-뉴질랜드: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의 결합. *교육개발* 2001/3, 4월호, 80-84.

Department of Education(1986a). *Th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Childcare Training*. Wellington: Meade Report.

Department of Education(1986b). *Th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ree Year Training for Kindergarten Teachers*. Wellington: Meade Report.

Department of Education(1988). *Education to be more: Report of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orking Group*. Wellington: Meade Report.

-
- Lazar, I. & Darlington, R. (1982). Lasting effects of early education: A report from the 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 No. 2-3.
- May, H. (2000). The 'Playground' of Early Childhood Policy: Social and political change versus social and political order. In NZEI e Riu Roa(Eds.), *Policy, Practice, and Politics: Early childhood millennium conference July 2000 proceedings*. Wellington: NZEI Te Rui Roa,
- May, H. (2001). *Politics in the Playground: The world of early childhood in post-war New Zealand*. Wellington: Bridget Williams Books, with the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 Research,
- Meade, A. & Podmore, V. N.(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Department/Ministry of Education- A Case Study of New Zealand. UNESCO: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 n°1*.
- Ministry of Education(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32.
- OECD(2009).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0.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102*.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
- Roupp, R., TRavers, J., Glantz, F., & Coelen, C. (1979). *Children at the center: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Daycare Study*. Cambridge, MA: Abt Books,

Social Advisory Council(1985). *Childcare Services: Impact and opportunities*. Wellington: Government Printer.

UNDP(2009). *Human development indices*. UNDP.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series/>

<http://www.workandincome.govt.nz>

<http://www.teacherscouncil.govt.nz>.

<http://www.educationcounts.govt.nz>

<http://ko.wikipedia.org>

<http://www.stats.govt.nz/domino/external/web/>

김은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육심리학과 졸업(박사)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문정

연세대학교 교육학 · 아동가족 전공 졸업(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졸업(석사)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9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발행인 · 조복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편역 · 김은설 · 김문정

발행일 · 2010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http://www.kiobe.re.kr>

대표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2396-71-4 93330

